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 홍콩협약(HKC)이 공식 발효('25.6.26.)됨에 따라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512호, 2026.3.31. 공포, 2027.4.1. 시행)됨에 따라, 유해물질의 종류, 선박재활용 시설의 인증기준, 출입검사 및 개선명령, 위반사실의 공표·보고, 검사 등 대행협정의 체결,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유해물질의 종류(안 제2조)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사용이 일부 제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를 별표로 구체화함

나.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기준(안 제3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박재활용업자가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환경적 위해 예방조치 등에 관한 인증기준을 규정함

다. 출입검사 등(안 제4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와 현장 등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함

라.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안 제5조)

유해물질목록이 적합하게 작성·유지되지 아니하거나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는 절차 등을 마련함

마. 공표 및 보고 등(안 제6조·제7조)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출항정지된 대한민국 선박에 대한 공표 기준과 선박소유자 및 선박재활용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사항 등을 규정함

바. 검사 등 대행협정의 체결(안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검사 등의 대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절차 및 협정 기간(5년 이내) 등을 구체화함

사.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9조·제10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에게 위임하고, 업무의 일부를 해양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1조)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 및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을 별표로 구체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검토 중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6. 9. 4. ~ 10. 16.)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물질)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과 같다.

제3조(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기준)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제4조(출입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유해물질목록의 유지·관리,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비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 보고한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선박의 유해물질 관리, 선박재활용시설 근로자의 안전·보건 또는 환경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재활용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재활용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위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승인된 선박재활용 계획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위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선박재활용시설 근로자의 안전·보건 또는 환경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등을 고려하여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선박재활용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1. 위반내용 및 개선 사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시기
4. 그 밖에 개선 조치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개선기간 중에 개선 사항의 이행 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개선 사항의 조사·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외국의 항만 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명세를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3개월의 범위에서 공표하거나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배포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대항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협회 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선박의 명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명(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
2. 총톤수(「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선박번호 및 국제해사기구번호(IMO Number)
4. 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용선의 경우에는 선박운항자의 명칭을 말한다)
5. 외국 항만당국의 점검일, 항만명, 출항정지 기간 및 출항정지 원인

제7조(보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한민국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의 제원(諸元)
2. 법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검사 현황
3. 「선박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 현황
4. 선박재활용 계약 체결 현황, 선박재활용시설로의 해당 선박 인도.

인수(引渡·引受) 관련 정보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재활용업자는 사고 상황, 원인, 대응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선박재활용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 파손 관련 사고
2.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 폐기물, 오수 또는 기체 등의 유출·비산·발산 또는 지하 침투 등으로 인한 사고
3. 선박재활용 작업자 등의 안전·보건, 환경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고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8조(검사 등 대행 협정의 체결) ① 대행기관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검사 등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정 체결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려는 대행기관은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 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선박재활용의 시작 및 완료 통지에 관한 업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사항으로 한정한다.)
 3.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사항으로 한정한다.)
 4. 법 제21조에 따른 항만국통제, 정밀한 점검, 시정조치, 위반사실의 통보 및 이의신청의 검토 등
 5.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6.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7.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선박재활용 계획의 변경승인
 3.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선박재활용 계획 승인의 보고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항으로 한정한다.)
 5.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항으로 한정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

조 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목록의 검인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업무
4. 그 밖에 선박재활용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1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영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해물질의 종류(제2조 관련)

1. 선박에 설치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유해물질

번호	물질	
1	석면	
2	폴리염화비페닐(PCB)	
3	오존층 파괴 물질	CFC
		Halons
		기타 완전 할로겐화 CFC
		사염화탄소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 클로로포름)
		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르카본
		하이드로브로모플루오르카본
		메틸 브로마이드
		브로모클로로메탄
4	유해방오시스템	유기주석 화합물을 살생물제로 함유한 방오 시스템
		시부트린 함유 방오 시스템

2. 선박의 구조물 및 장비에 포함된 유해물질

번호	물질
1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2	6가 크롬 및 6가 크롬 화합물
3	납 및 납 화합물
4	수은 및 수은 화합물
5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6	폴리브롬화벤조페논에테르(PBDEs)
7	폴리염화나프탈렌(염소 원자 3개 이상)
8	방사성 물질
9	특정 단쇄 염화 파라핀(알칸, C10-C13, 염소)

3. 운항 중 발생한 유해물질 및 폐기물

번호	속성		물질
1	액체	유분	등유
2			화이트 스피릿
3			윤활유
4			유압 오일
5			고착 방지 화합물
6			연료 첨가제
7			엔진 냉각수 첨가제
8			부동액
9			보일러 및 급수 처리 및 시험 시약
10			탈이온 재생 화학 물질
11			증발기 도징 및 석회 제거 산
12			페인트 안정제/녹 안정제
13			용제/회석제
14			페인트
15			화학 냉매
16			배터리 전해질
17			알코올, 변성 알코올
18	가스	폭발물/ 인화성 물질	아세틸렌
19			프로판
20			부탄
21			산소
22		온실 가스	CO2
23			과불화탄소(PFCs)
24			메탄
25			수소불화탄소(HFCs)
26			아산화질소(N2O)
27			육불화황(SF6)
28	액체	유분	병커: 연료유
29			그리스
30			폐유(슬러지)
31			기계에 장착된 후처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빌지 및 폐수
32			유성 액체 화물 탱크 잔류물
33		기타 액체류	선박평형수
34			미처리 하수
35			처리 하수
36			비유성 액체 화물 잔류물

번호	속성		물질
37	가스	폭발성/인화성	연료 가스
38	고체		건조 화물 잔류물
39			의료 폐기물/감염성 폐기물
40			소각재
41			쓰레기
42			연료 탱크 잔여물
43			유성 고체 화물 탱크 잔류물
44			기름기나 화학물질로 오염된 형질
45			배터리(납축 배터리 포함)
46			살충제/살충제 스프레이
47			소화기
48			화학 세정제(전기 장비 세정제, 탄소 제거제 포함)
49			세제/표백제(액체일 수 있음)
50			기타 의약품
51			소방복 및 개인 보호 장비
52			건조 탱크 잔류물
53			화물 잔류물
54			1. 또는 2.에 나열된 물질이 포함된 예비 부품

4. 유해물질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번호	속성	예시
1	전기 및 전자 장비	컴퓨터, 냉장고, 프린터, 스캐너, 텔레비전 세트, 라디오 세트, 비디오 카메라, 비디오 레코더, 전화기, 소비자 배터리, 형광등, 필라멘트 전구, 램프
2	조명 장비	형광등, 필라멘트 전구, 램프
3	비 선박용 가구, 인테리어 및 유사 장비	의자, 소파, 테이블, 침대, 커튼, 카펫, 쓰레기통, 침대 린넨, 베개, 수건, 매트리스, 수납선반, 장식, 욕실 설치물, 장난감, 구조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통합되지 않은 미술품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적인 기준

- 가. 작업자 또는 선박재활용시설 인근 주민에게 건강상의 위험을 야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갖출 것
- 나. 선박재활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감소 및 제거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관리체계, 절차 및 방법을 갖출 것
- 다. 유해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갖출 것
- 라. 작업자의 안전·보건 보호를 위한 비상대비 및 대응체계를 갖출 것

2. 건강과 환경에 대한 사고 예방

- 가. 화기작업의 안전 조건을 수립, 관리,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할 것
- 나. 선박의 공간 및 폐쇄된 공간으로 진입하기 위한 안전 조건을 수립하고, 관리되며,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할 것
- 다. 사고, 직업병, 상해와 인간 건강과 환경에 대한 기타 악영향을 방지하는 절차를 수립할 것
- 라. 건강과 환경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유출 및 배출을 방지하는 절차를 수립할 것

3.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유해물질의 관리

- 가. 선박의 유해물질목록의 모든 유해물질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제거를 보증하여야 하고, 재활용 작업 책임자 및 작업자는 선박재활용 시설 인증 기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유해물질목록과 선박재활용 계획의 취급에 익숙할 것
- 나. 유해물질목록에 기술된 특정 유해물질의 제거는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의 교육 프로그램과 안전 및 보건 규정 준수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훈련되고 장비를 갖춘 작업자에 의해 수행될 것
- 다. 선박에서 제거된 모든 유해물질과 폐기물들은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 설비로부터 분리하여 폐기장소에 보관 후 공인된 폐기물 관리 시설로 이송할 것

4. 비상 대비와 대응

- 가. 응급 상황의 발생 시,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훈련을 하도록 보장할 것
- 나.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응급 상황의 발생 시, 모든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내부 소통 및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다. 관련 관할 당국, 인근 지역사회 및 비상 대응 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 라. 선박 재활용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한 응급 처치 및 의료 지원, 화재 진압 및 대피, 오염 방지 조치를 제공할 것

다. 선박 재활용 시설의 모든 근로자에게 직무 역량에 맞춰 관련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비상사태 예방, 대비 및 대응 절차에 관한 정기적인 훈련을 포함할 것

5. 작업자 안전과 훈련

가. 모든 선박 해체 작업에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 및 복장의 가용성, 유지·관리 및 사용을 보장하여야 하며, 개인 보호 장구는 아래와 같다.

- 1) 머리보호구
- 2) 안면과 눈 보호구
- 3) 손과 발 보호구
- 4) 호흡기 보호 장비
- 5) 청력보호구
- 6) 방사능 오염 예방 도구
- 7) 낙하 방지 장비
- 8) 적절한 의복

나. 작업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선박 해체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교육 프로그램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선박재활용시설의 하청 인력 및 피고용인을 포함하여 모든 작업자를 포함할 것
- 2) 자격 있는 사람에 의해 행해질 것
- 3) 정기적으로 최초 및 보수 훈련을 제공할 것
- 4) 훈련 참가자들의 이해도 및 훈련의 숙지 정도를 평가할 것
- 5)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할 것
- 6) 문서화할 것

다. 선박 재활용 시설의 모든 작업자가 선박 해체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적절한 교육 및 숙지 과정을 거치도록 할 것

6. 사고, 사건, 직업병 및 만성적 영향에 대한 보고 체계

가. 선박 재활용 시설은 작업자의 안전, 인체 건강 및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잠재력이 있는 사건, 사고, 직업병 또는 만성적 영향을 관할 당국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련 체계를 마련할 것

나. 보고서에는 사건, 사고, 직업병 또는 만성적 영향에 대한 설명, 그 원인, 취해진 대응 조치, 그리고 그 결과 및 향후 취해야 할 시정 조치를 포함할 것

비고 : 위 기준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에 요구되는 세부기준 및 그 밖의 사항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the authorization of ship recycling facilities)」 및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 재활용 지침(Guidelines for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ship recycling)」을 따른다.

대행기관 요건 및 대행협정의 내용(제8조제2항 관련)

1. 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적·물적 요건

가. 조직 체계

- 1)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는 것
- 2) 검사기준을 개발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는 것
- 3) 우리나라 모든 관할수역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 사무소를 갖추는 것

나. 검사 인력

- 1) 선박검사원 자격을 가진 사람을 확보할 것
- 2) 선박검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제도를 갖추는 것

다. 기술 및 품질 관리

- 1) 검사기준을 개발하고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 2) 품질관리 능력을 갖추는 것

라. 재정 능력

- 1) 대행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2. 대행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대행업무의 범위

나. 외국 항만당국으로부터 항만국통제에서 지적된 사항의 통보

다. 검사 대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제공

- 1) 선박검사원의 선임 및 해임
- 2) 발급·유지·취소된 증서
- 3) 기술자료 및 통계

라. 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

마. 정부 또는 정부를 대신한 제3자의 정기적인 감사 수행

바. 기밀 유지

사. 선박검사원의 자격

아. 협정의 개정

자. 손해배상책임

차. 협정 해지 요건

비고 : 협정의 내용 중 법 제24조에 따른 대행업무의 범위 및 감독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IMO 회원국 감사제도(Framework and procedures for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소유자가 유해물질목록을 유지 및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호	50만원
2.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소유자가 유해물질목록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호	30만원
3.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소유자가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호	30만원
4.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소유자가 원활한 재활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4호	200만원
5.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소유자가 선박재활용계획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5호	30만원
6. 법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선박재활용업자가 선박 인수, 선박재활용의 시작 계획 또는 선박재활용 완료통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6호	30만원

■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 선 명 령 서		구분	선박소유자	[]
			선박재 활용업자	[]
일자		장소		
선박명/시설명		선박번호		
수검자 직위/성명	(서명)	선박항행정지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1. 위반내용

번호	위 반내 용	처분내 용

2. 개선명령

번호	개선사항	개선기한	완료확인		
			일자	성명	서명

3.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 : 년 월 일까지

4. 기타 (개선조치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해양경찰서장

비 고

- 본 개선명령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 보고 및 행정청의 이행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재활용업자는 「국제항해 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에 따른 법정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부적합)가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됨
- 행정청은 개선명령의 이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한 후속 인증, 검사 절차를 보류할 수 있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연 락 처	051-773-5844